

인 조합에서 용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공유 잡종재산을 협의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을 거쳐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7. 管理體系

국유재산은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과 관리·처분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리청」이 있다. 따라서 총괄청은 재정경제부가 되며 관리청은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이므로 각부·처·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에서와 같이 관리청은 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산림청·철도청에서도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잡종재산은 재정경제부에서 시·도에 위임하고 있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에 재위임 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도 도로·구거·유수지 등을 시·도에 위임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 각 기관단위 또는 회계단위도 재산관리관을 두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과 다르다 하겠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경우도 시·도 공유재산을 시·군·자치구에 대부분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8. 管理機關의 地位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 및 잡종·보존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성업공사에 위탁(국유재산법 제19조, 제32조)할 수 있다.

각 관리청인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총괄청이 요구한 조치를 최대한 이행해야 하나, 총괄청의 하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은 아니므로 총괄청의 조치에 대하여 관리청의 이의가 있을 때는 총괄청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처리(국유재산법 제15조)해야 한다.

가. 總括廳：財政經濟部

-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의 정비
 - 국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와 개선
 -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와 해석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의 통일과 조정
 -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 소관청의 지정(관리청 지정)
 - 관리환재정·관리청 재정
 - 주요관리·처분에 대한 협의
 -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
 - 관리상황의 감사
- 국유재산의 현황파악 및 권리보전
 - 국유재산 가격개정 및 실태조사